



보도 일시	2022. 3. 1.(화) 12:00	배포 일시	2022. 3. 1.(화) 10:00
담당 부서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책임자	과 장 고근수 (044-204-3301)
		담당자	사무관 임경수 (044-204-3312)

'21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짧은 영상숏폼으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감면 적극 안내 -
- 운영시간 제한 업종 등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 (개요)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3. 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 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 2.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 (신고도움)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 모바일, 숏폼 등으로 최대한 제공합니다.

○ 홈택스에서는 법인별 신고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유의사항) '21년 45개 → '22년 50개, (절세 도움말) '21년 30개 → '22년 32개

- 홈택스 접속 즉시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요 분석자료의 3년간 추이를 시각화한 도표도 제공합니다.

○ 신고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자료 중 꼭 알아야 할 항목을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니, 성실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감면 신고 방법을 숏폼(1~2분 가량의 짧은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 유튜브 등에 게시하였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관련 세액공제 7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등 3편

□ (세정지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① (직권연장)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구 분		세정지원 대상
운영시간 제한 업종	1그룹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기타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고용위기지역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전남) 해남군

② (신청연장) 운영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 (신고 후 검증) 향후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1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대상)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 31.(목)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 2.(월)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 ①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과 ②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법인세법 §60의2)
 -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방식(법인세법 §76의8)
-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99.9만여 개로 지난해보다 7.8만여 개 증가*하였습니다.
 - * 신고대상 법인: (‘21년) 92만1천 개 → (‘22년) 99만9천 개
- (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3. 1.(화)부터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
 -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 2.), 중소기업은 2개월(5. 31.)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2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꼭 확인하세요

편리한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 (납세자 중심 안내) 국세청은 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또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6개의 유형별로 분류하고 탭(Tab)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구성 |

유형	제공자료
주요안내	주요지표 분석, 신고시 유의사항·절세 도움말 중 주요 안내사항
기업 분석자료	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공제·감면 현황, 주요 판매관리비 및 지출증빙수취 현황
신고 참고자료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자료,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 주주현황
신고시 유의사항	법인별·업종별·계정과목별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법인별·업종별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주요 개정 세법, 참고할 세법 규정

- (모바일 안내) 신고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자료의 주요 항목*을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직접 제공하고,

* 법인별 분석자료 중 중요도 순서로 상위 항목

- 창업하거나 기존에 공제·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도 세제혜택*을 모바일로 제공하여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에만 적용되거나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주요 공제·감면 제도

도움자료 유형별(Tab) 안내 및 활용

<2022년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주요안내

기업 분석자료

신고 참고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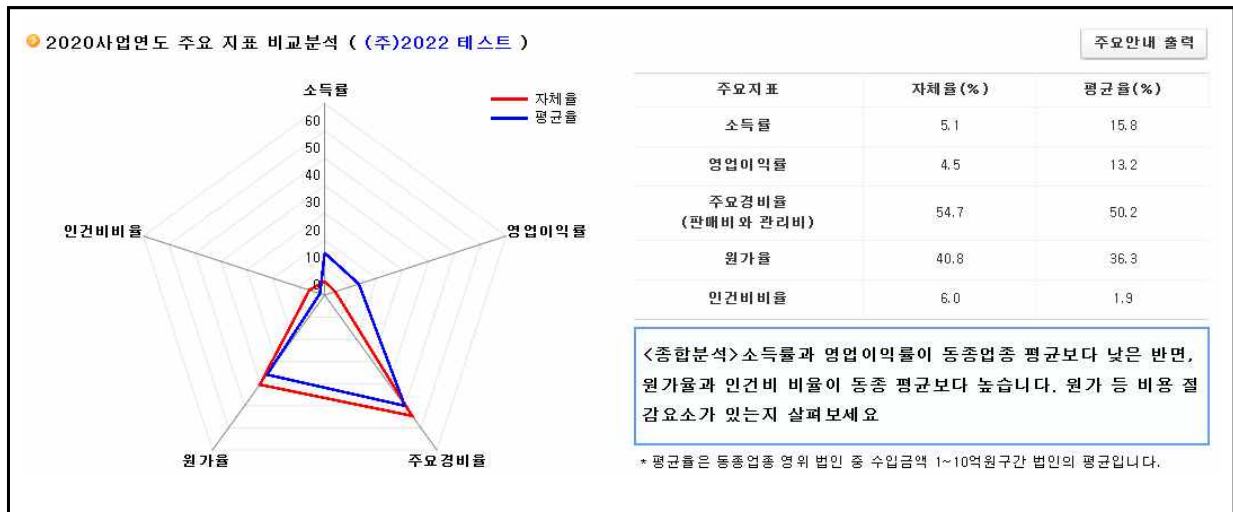
세법 도우미

□ (주요안내) 다양한 도움자료 중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요약한 핵심 정보*를 첫 화면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중 주요 안내자료와 기업체질정보 제공

○ 또한, 소득률, 경비율, 원가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평균과 비교하여 시각화한 '기업체질정보'도 첫 화면에 같이 제공합니다.

| 기업체질정보 제공화면 |



<2022년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주요안내

기업분석자료

신고 참고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 (기업 분석자료) 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주요 판매관리비 및 지출증빙수취 현황* 등의 최근 3년간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화면으로 신고 전에 확인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지출증빙이 필요한 손익계산서 비용항목(매출원가, 임차료, 광고선전비, 보험료 등) 합계와 실제 제출한 지출증빙(세금계산서 등)과의 차이금액

<2022년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주요안내

기업 분석자료

신고참고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 (신고 참고자료)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 등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참고자료를 확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변잡화·가정용품 구입, 개인적 치료, 해외사용 등 업무 관련성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현황으로 최근 3년간 추이도 제공

○ 올해는 비용 및 고용관련 공제·감면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원천세 신고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지급인원 및 지급액

<2022년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주요안내

기업 분석자료

신고 참고자료

신고시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 (신고시 유의사항) 신고내용확인*이 중점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신고오류 및 추징항목 위주로 해당 법인의 분석결과와 업종별·계정과목별 유의사항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 빅데이터·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정밀 분석한 유형별·업종별 개별분석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21년) 45개 항목, 25만여 개 법인 → ('22년) 50개 항목, 28만여 개 법인

○ 특히, 1인 주주 법인 등 세무전담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법인이 자주 잘못 신고하는 사례*를 법인별로 분석하여 사전 안내하니 신고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인건비 계상,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상품권 구입액 안내 등

| 개별분석자료 주요 안내항목 |

변칙적 회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무관사용 법인카드내역 분석자료(빅데이터 분석) • 1인주주 등 소규모 법인 신고누락 분석자료 •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 분석자료 • 주택 보유·임차 법인 주주등의 주택 사적 사용 분석자료
특수관계인 부당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소득 허위지급 분석자료 • 특수관계인 대여금, 차입금 부당 계상 분석자료 • 특수관계인의 특허권 부당매입 분석자료(빅데이터 분석) •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 누락 분석자료(빅데이터 분석)
부당 공제·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당적용 분석자료 • 해외 임가공업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 적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법인의 창업 해당 여부 분석자료(빅데이터 분석) • 영농·영어조합 법인의 부당감면 분석자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상 등 불성실 사업자와 거래한 자료 • 법인세 추가납부액에 대한 세무조정 누락 자료 • 서화·골동품 등 업무무관 자산 보유자료 •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 법인의 부당 공제·감면 분석자료(빅데이터 분석)

<2022년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주요안내

기업 분석자료

신고 참고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 (절세 도움말)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법인별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을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21년 30개 유형 → '22년 32개 유형)

* (예시) 결손발생 중소기업 → '21년 발생한 결손금은 직전 2년까지 소급공제 확대, 고용증가 법인 → 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금액 '21년 '22년 한시 상향(1인당 최대 1,300만원)

<2022년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주요안내

기업 분석자료

신고 참고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 (세법 도우미) 신고 도움자료와 연관된 세법규정*과 최근 주요 개정 세법**을 법인 유형에 따라 안내하는 '세법도우미'도 제공합니다.
('21년 86종 → '22년 85종)

* (예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고액인 법인 →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 안내

** (예시) 주택 등 양도 법인 →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추가납부 개정내용 안내

신고오류 검증지원 서비스 확대

- (신고오류 자동검증 서비스) 홈택스 신고 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오류 사항을 자동검증할 수 있는 '오류검증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21년 25개 유형 → '22년 30개 유형)
 - * 토지 등 양도소득 산출명세서 미제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적정 여부, 농업경영체 미등록법인의 부당감면 여부 등 6개 유형 추가
- 신고서 제출단계에서 전산검증을 통해 오류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알림창으로 표시해 드리니 신고서 제출 전에 오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오류수정 필요 항목(오류)'과 '오류검토 참고 항목(경고)'으로 구분
- 특히, 토지 등 양도소득 산출명세서 미제출, 최저한 세율의 잘못된 적용, 공제·감면 중복 적용, 접대비 한도 초과 등 명백한 오류(오류수정 필요 항목)는 오류가 수정되기 전에는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 (자기검증용 검토서)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자기검증용 검토서'도 확대*하여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1년 18개 유형 → '22년 21개 유형)
 -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검토서식, 통합투자세액공제 검토서식 등 3개 유형 추가
 -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참고자료실

절세 도움말 안내 개선

- (제공정보 확대) 법인별·업종별 절세 도움말은 상세보기 기능을 추가하여 적용대상, 공제금액 등의 제도 개요를 자세히 제공하니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중전) 법 조문의 주요 내용 제공 → (개선) 적용대상, 공제금액 등 제도 개요를 추가 제공

3

숏폼 콘텐츠 등으로 쉽게 공제·감면 제도를 알아보세요

- (신고도움) 세무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잦은 세법개정 등으로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국세청·유관기관 누리집,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 올해는 중소기업이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주요 공제·감면 제도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숏폼(short form) 콘텐츠, PPT 자료를 새롭게 제작하였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숏폼 콘텐츠 10편 |

구 분	제 목	관련 조문
고용 관련	근로소득 증대기업 세액공제	조특법§29의4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특법§29의7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사례 (고용감소 추가납부)	조특법§29의7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사례 (추가납부 유예)	조특법§29의7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30의4
	사회적 기업 법인세 감면	조특법§85의6①
	장애인 표준사업장 법인세 감면	조특법§85의6②
기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7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조특법§8의4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조특법§96의3

|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제도 안내(PPT) 22개 |

구 분	주요 내용(제도개요, 적용대상, 사후관리)
고용지원 조세특례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투자촉진지원 조세특례	통합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등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지원 조세특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연구인력개발 조세특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등
참고자료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상시근로자 계산사례 등

- 또한, 신고안내 동영상, 공공기관 실무자를 위한 법인세 신고안내 자료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하였습니다.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신고시 유의사항

4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은 세정지원을 이용하세요

- (개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직권연장)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구 분		세정지원 대상
운영시간 제한 업종	1그룹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고용위기지역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전남) 해남군

- (신청연장) 운영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사업상 피해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접근경로)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연장"으로 조회 > 인터넷 신청
 - ※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 (지원내용)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시 확대*된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를 안내하고 환급액을 빠르게 지급하여 결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겠습니다.
 - * (종전) 직전 사업연도에 한해 소급공제 → (개선) '21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직전 2년 사업연도까지 소급공제 기간 확대

- (개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신청하면 국세청이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한 및 방법)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 (소득세) 신고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접근경로)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연구 인력개발비"로 조회 > 인터넷 신청
- (신청대상) 연구·인력개발에 사용된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수행한 연구과제가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에 해당되는지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또는 여러 가지 연구 과제가 있는 경우 특정과제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혜택)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 (변경사항) 올해부터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연구노트 작성방법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 *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급여대장 등 10가지로 명확화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기업이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6

공익법인의 신고서류, 5. 2.까지 작성·제출하세요

- (출연재산 등 보고)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등에 대한 「출연 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 올해부터는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기한이 당초 3월 말에서 4월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올해 4. 30.은 휴일이므로 5. 2.까지 제출

- (결산서류 공시)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5. 2.까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의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 세금종류별서비스 > 공익법인공시 > 공시/공개 등록하기

** 2021년도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가능

- (의무이행 보고) 올해부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종전 주무관청에 제출하던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5. 2.까지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출의 80%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

| 공익법인의 주요 협력의무 |

협력의무	의무대상
①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②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당해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③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공시	▶ 총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 20억 원 이상
④ 결산서류 등 공시	▶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
⑤ 의무이행 여부 보고	▶ 종교단체를 제외한 구 지정기부금단체

7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세요

-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간편결제 등) 홈택스* 및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 * (접근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금융결제원 > 지로업무 > 인터넷지로 또는 카드로택스
 - **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CD/ATM을 이용한 신용(체크)카드 납부안내 |

구 분	이용가능 금융기관
금융기관 (23개)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산업은행, 새마을금고 중앙회, 수협은행, 수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한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신용카드사 (13개)	광주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 신한카드, 씨티카드, NH카드, 전북은행, 제주은행, KB국민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 (계좌이체) 국세계좌인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를 이용하여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 * 국고대리점이 아닌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과 증권사의 계좌에서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 세무서에서는 비대면 수납과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 무인신용카드 수납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 또한, 신고내용확인 과정과 세무조사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신고내용확인 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주요 신고내용확인 추정 사례 |

- 1]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누락한 사례
- 2]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 지급한 사례
- 3]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특정시설물 이용권(고가 콘도회원권 등)을 취득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
- 4]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의무 불이행 제재 부과 공과금을 손금산입한 사례
- 5]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사업을 승계한 후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한 사례
- 6]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사용하고 비용처리한 사례
- 7]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한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한 사례
- 8] 조사 등으로 전기의 차기환류적립금이 증액 경정되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 신고한 사례

- 다만,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기업,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 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부서 <총괄>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책임자	과 장 고근수 (044-204-3301)
		담당자	사무관 임경수 (044-204-3312)
<협조>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책임자	과 장 박인호 (044-204-3901)
		담당자	사무관 김지연 (044-204-3902)
<협조>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	책임자	과 장 고영일 (044-204-2551)
		담당자	사무관 성승용 (044-204-2562)



• • 참고자료 •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주요 내용

1.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접근 경로 17
2. '22년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개선 내용 19
3. 신고시 유의사항(예시) 21
4. 절세 도움말(예시) 22
5. 세법 도우미(예시) 23
6. 홈택스 신고오류 검증 항목 24
7. 자기검증용 검토 서식 25
8.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26
9. 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 관련 개정사항 27
10. 주요 신고내용확인 추징 사례 28

중소기업 조세지원 및 해외진출기업 신고 참고자료

1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36
12. 국제거래 및 해외투자 관련 자료 제출 37
13.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 조회 37

참고 1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접근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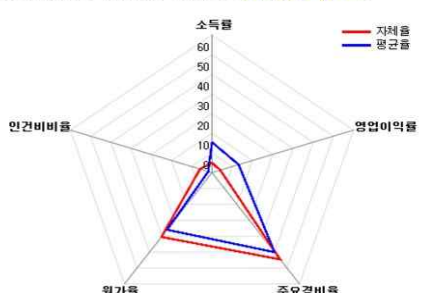
1 바로제공 서비스(법인사업자)

■ 홈택스 접속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로 바로 이동

주요안내
기업 분석자료
신고 참고자료
신고서 유의사항
질세도움말
세법도우미

공동 인증서

● 2020사업연도 주요 지표 비교분석 ((주)2022 테스트)



주요지표	지체율(%)	평균율(%)
소득율	5.1	15.8
영업이익률	4.5	13.2
주요경비율 (판매비와 관리비)	54.7	50.2
원가율	40.8	36.3
인건비비율	6.0	1.9

이런 꼭 알아주세요!

지출증명서류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법인의 신고 시 유의사항

202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의 증빙수취 대상 계정과목 금액과 귀 법인이 제출한 정규증빙 수취금액의 차이 발생 금액을 알려드리니 정규증빙 수취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취대상금액(①) : 328백만원
- 증빙수취금액(②) : 256백만원
- 차이금액(①-②) : 72백만원
- 증빙수취비율(②/①) : 78.0%

주요안내 출력

더보기

2 원스톱 접근(세무대리인)

■ 홈택스 접속 → 팝업창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HomeTax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자리는 그세하그금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안내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개별 안내자료, 최근 신고상황,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 종합적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니 법인세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바로가기

※ 접근경로 : 조회/발급-세금 신고 납부-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 신고안내 교육자료(동영상/PPT)」 바로가기

닫기

복지이음

소득과 복지를 연결하다!

- 근로자녀장려금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 인건비 간편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 본인 소득내역 확인(근로인적용역)

세금종류별 서비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현금영수증

공익법인공시

소비자세

사업자등록

원천세

민원증명

모의계산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전자신고결과조회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지역 상세 내역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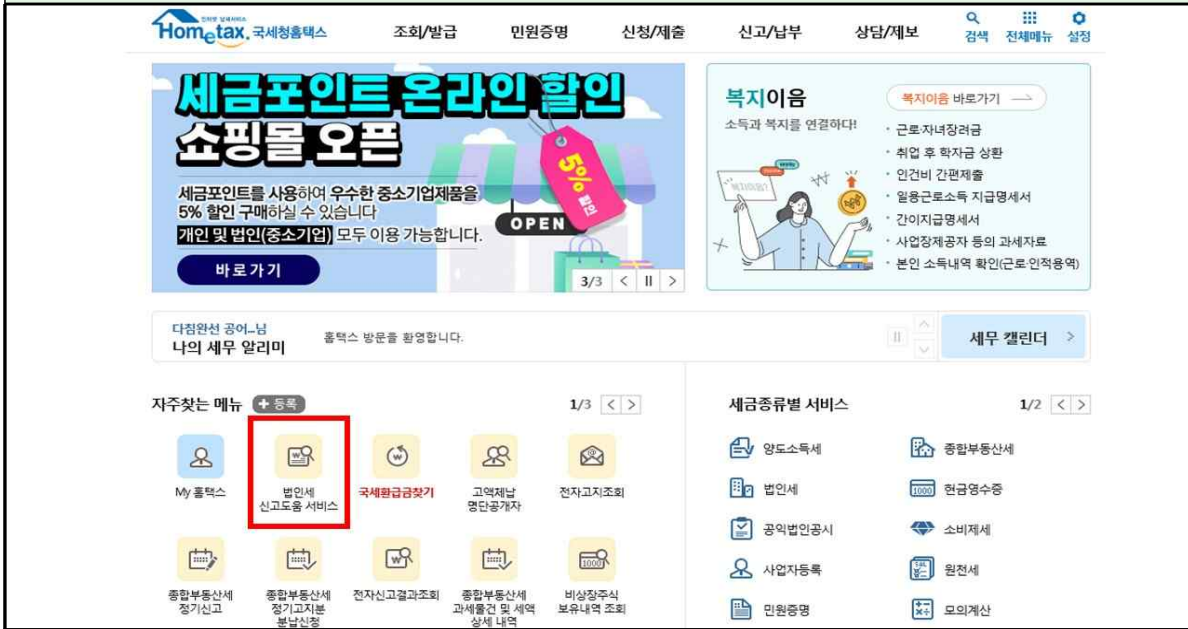
세금포인트 조회

참고 1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접근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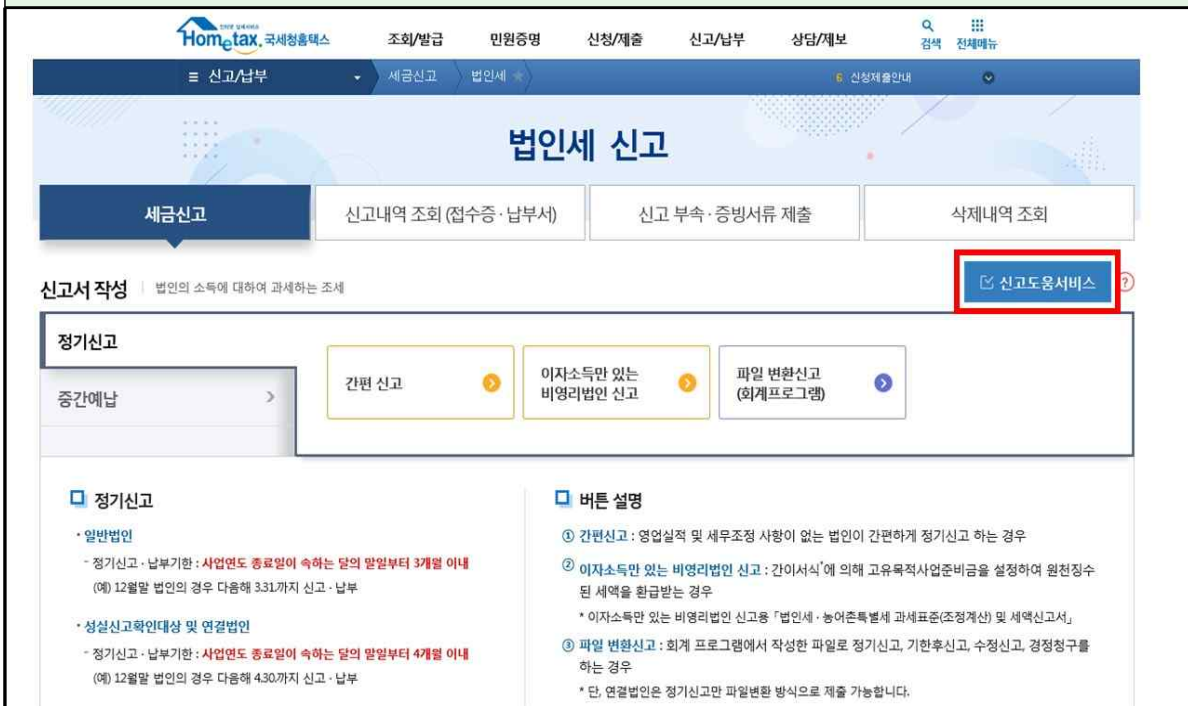
3 일반 접근(메인화면 바로가기)

■ 홈택스 접속 → 메인화면 '자주 찾는 메뉴'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4 일반 접근(메뉴)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참고 2

'22년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개선 내용

1 도움자료의 위치를 조정하여 올해 자료와 이전 자료로 구분

2022년 법인세 신고 안내자료

◆ 유의사항

- 본 자료는 법인세 신고안내를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 법인세 신고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정기 신고사항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정신고, 고지 등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법인세 신고 및 신고안내 자료에 대한 문의처 : 복인천세무서 법인세과 법인2팀 한호아 (☎ 000-0000-00000)

주요안내	기업 분석자료	신고 참고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
------	---------	---------	----------	-------	-------

- **신고 참고자료** :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원천세 신고자료, ('21년 자료)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 현황, 주주 현황

주요안내	기업 분석자료	신고 참고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
------	---------	---------	----------	-------	-------

- **기업 분석자료** : 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주요 공제·감면 현황, ('20년 이전자료) 주요 판매관리비 현황, 지출증빙 수취 현황 제공

- **(화면 개편)** 신고도움자료의 위치를 조정하여 신고에 직접 활용이 가능한 자료('21년)와 이전 신고의 분석자료('20년 이전)를 구분하여 제공

2 주요 판매관리비의 지출금액·점유비 추이 시각화

2022년 법인세 신고 안내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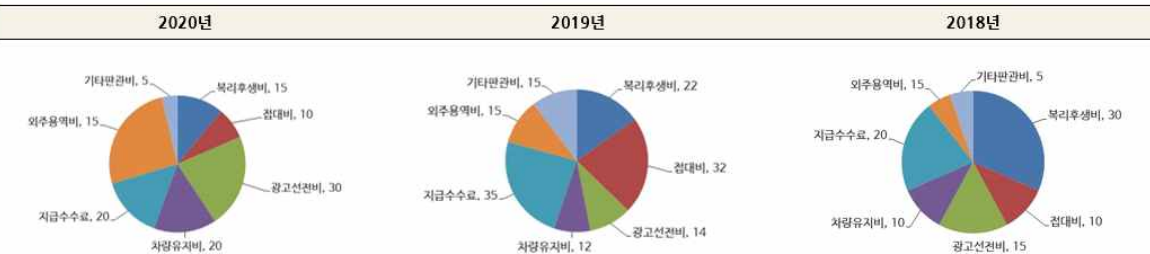
◆ 유의사항

- 본 자료는 법인세 신고안내를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 법인세 신고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정기 신고사항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정신고, 고지 등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법인세 신고 및 신고안내 자료에 대한 문의처 : 복인천세무서 법인세과 법인2팀 한호아 (☎ 000-0000-00000)

주요안내	기업 분석자료	신고 참고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
------	---------	---------	----------	-------	-------

| 최근 3년간 판매관리비 지출 금액 |



- **(주요 판관비 안내)**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주요 판관비의 지출금액·점유비에 대한 최근 3개 사업연도 자료를 원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제공

참고 2

'22년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개선 내용

3 원천세 신고자료, 주요 공제·감면 현황 신규 제공

주요안내	기업 분석자료	신고 참고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
3. 원천세 신고자료(2021년 귀속) (단위 : 명, 백만원)					
합계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지급인원	50	23	7	17	
총지급액	3,301	127	85	480	
<small>*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내역으로 수정신고, 고지 등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 지급인원, 총지급액은 2021년 귀속 기준으로 근로소득[간이세액(A01), 일용근로(A03)], 사업소득[매월징수(A25)], 기타소득[그 외(A42)] 코드의 합계액입니다.</small>					
주요안내	기업 분석자료	신고 참고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
3. 주요 공제·감면 현황 (단위 : 원)					
- 2021사업연도 총공제·감면세액 : 932,400,000 원					
구분	최저한세적용여부	공제·감면명	공제·감면세액		
세액감면	부	지방이전중소기업감면	910,000,000		
세액감면	여	제주청단과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15,000,000		
세액감면	여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7,400,000		
<small>* 직전년도에 정기신고 및 기한 후 신고시 적용 받은 공제·감면 중 세액이 큰 순서대로 3개까지 제공됩니다.</small>					

- (제공자료 추가) 공제·감면 등 신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 연도('21년)의 원천세 신고자료 및 이전 연도('20년)의 공제·감면 현황 추가 제공

4 절세 도움말 상세보기 기능 제공

주요안내	기업 분석자료	신고 참고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
IV. 절세 도움말 절세도움말 출력					
1. 법인별 절세 도움말 일괄 상세보기 +					
안내사항	안내내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혜택 안내	귀 법인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상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알려드리니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보기				
안내내용					
귀 법인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상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알려드리니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요> ○적용대상 : 작물재배업, 도소매 등 48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감면비율 : 기업규모, 업종,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 *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비율을 적용 ① 중소기업(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내인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전국) 도소매,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 - (수도권) 도소매, 의료업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20% - (수도권 외) 도소매, 의료업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30% ② 중소기업(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수도권 외) 도소매,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 5% - (수도권)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 - (수도권 외) 도소매, 의료업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5% ○ 감면한도 : 1억원 - (예외)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1억원 - (감소인원×500만원)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및 제6조					

- (제공정보 확대) 절세 도움말은 상세보기 기능을 추가하고 제도 개요(공제·감면 적용대상, 공제금액)를 요약하여 추가 제공

참고 3

신고시 유의사항 (예시)

<2022년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주요안내

기업 분석자료

신고 참고자료

신고시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1. 법인별 유의사항

안내 사항	안내 내용
특정 항목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있는 법인의 신고 시 유의할 사항	<p>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세무조사나 신고내용 확인 시 추정되는 주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귀 법인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 중 이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려드리니 업무 관련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변잡화 구입 추정액 : 47백만원 2. 가정용품 구입 추정액 : 98백만원 3. 업무무관업소 이용 추정액 : 57백만원 4. 개인적 치료 추정 비용 : 23백만원 5. 해외사용액 : 158백만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있는 법인의 신고 시 유의할 사항	<p>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허용)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가자금금 인정이자를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지출증명서류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법인의 신고 시 유의할 사항	<p>202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의 증빙수취 대상 계정과목 금액과 귀 법인이 제출한 정규증빙 수취금액의 차이 발생 금액을 알려드리니 정규증빙 수취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취대상금액(①) : 170,865백만원 2. 증빙수취금액(②) : 78,292백만원 3. 차이금액(①-②) : 92,573백만원 4. 증빙수취비율(②/①) : 45.8%

2. 업종별 유의사항

안내 사항	안내 내용
상품 종합 수출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신고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환급금이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 수출(선적)이 완료된 매출거래를 선수금으로 계상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 신용장 외 결제방식의 수출대금이 수입금액에 적정하게 포함되었는지 여부 -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특별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않고 인정이자도 계상하지 않았는지 여부
치과 병원을 영위하는 법인의 신고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플란트 등 비보험 수입, 건강보험공단 미청구분 등에 대한 수입금액 적정여부 -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할 비용을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였는지 여부 - 실제 근무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지 여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정 사용 및 5년 내 미사용분에 대한 환입 적정 여부 -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무상(저가) 의료용역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신고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옥상광고판 설치, 알뜰장터 등 장소임대에 따른 임대료 수익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 재활용품 매각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 입주가가 아닌 외부인에게 수취하는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비용을 계상하였는지 여부

참고 4

절세 도움말 (예시)

<2022년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주요안내

기업 분석자료

신고 참고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1. 법인별 절세도움말

안내 사항	안내 내용
고용증대세액공제 확대 안내	<p>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1인당 일정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중소 및 중견은 그 다다음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우대 공제 대상 확대(60세 이상 고령자 추가), 수도권 외 지역 청년 등 공제금액 100만원 상향 등 개정사항을 알려드리니 공제요건을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도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 공제요건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 ○ 상시근로자 :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다음의 해당하는 자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근로소득의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 1인당 공제금액 : 사업장 소재지, 기업규모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내) 중소 1,100만원, 중견 800만원, 그 외 400만원 - (수도권 외) 중소 1,300만원, 중견 900만원, 그 외 500만원 ②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내) 중소 700만원, 중견 450만원 - (수도권 외) 중소 770만원, 중견 450만원 ○ 공제기간 : 중소·중견 3년, 그 외 2년간 공제 ○ 사후관리 :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잔여기간 공제 배제 및 공제세액 추징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의7

2. 업종별 절세도움말

안내 사항	안내 내용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안내	<p>2018.1.1. 이후 신성장서비스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은 감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포함 3년까지 법인세의 75%, 그 다음 2년은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됨을 알려드리니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도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신성장서비스업이 주업인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제외),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지역에 관계없이 적용가능 서로 다른 사업 영위시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 감면비율 : 감면기간 5년중 3년은 75%를 감면하고 이후 2년은 50%를 감면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참고 5

세법 도우미 (예시)

<2022년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우미서비스>

주요안내

기업 분석자료

신고 참고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1. 참고할 세법규정

안내사항	안내내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법인세법§27의2)	업무용전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 사업연도 1년 미만,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 보유·임차한 경우 별도로 산출한 금액으로 함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조세특례제한법§8의4)	'2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2개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한도로 소급 공제('19사업연도의 납부세액에서 먼저 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12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연구·개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30의4)	중소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 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에 대한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및 감면액 제외) 상당액의 100%(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시 50%)를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요 개정세법

안내사항	안내내용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법인세법시행령§19)	○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 비용처리 기준금액 상향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이하 →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20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사내근로 복지기금 지출금액의 손비 인정 (법인세법§19)	○ 기업의 원활한 근로자 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해당 내국법인 또는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확대 *20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대손사유에 해외채권의 회수불능 추가 (법인세법시행령§19의2)	○ 해외채권의 대손처리 시 납세협력 부담 완화를 위해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되는 경우 대손 사유에 추가 - 채무자의 파산, 행정불명 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 거래은행, 공공기관 등이 확인한 경우 - 분쟁발생으로 중재기관, 법원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 - 채무자의 지급거절 등으로 채권금액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채권금액을 감면하는 경우로서 현지 거래은행, 공공기관 등이 확인한 경우 *2021.2.17.이후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되는 경우부터 적용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상향 및 추가세율 적용대상조정 (법인세법§55의2)	개인, 법인가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를 적용대상에 추가 - (세율) 법인세율(10~25%) + 10% → 법인세율(10~25%) + 20%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6

홈택스 신고오류 검증 항목

항 목 명		검 증 내 용
1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 관련 공제·감면 적용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2	공제·감면 중복적용	중복적용이 금지된 공제·감면세액의 중복 여부
3	최저한세	최저한세 계산 관련 서식 미제출, 최저한세율 착오 적용 여부 등
4	공제·감면 한도	공제·감면의 적용 한도 초과 여부
5	농어촌특별세(공제·감면)	공제·감면 적용 시 농어촌특별세 신고 적정 여부
6	투자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법인의 「투자자산명세서」제출 여부
7	일몰도래 공제·감면	일몰 도래된 공제·감면 적용 여부
8	기업 유형별 공제·감면	일반(중견)기업이 중소기업 관련 공제·감면 적용 여부
9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소규모 임대업 주업법인 또는 승용차 일부기간 보유시 비용한도 계산 적정 여부
10	접대비	일반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 과다 계상, 접대비조정명세서 미제출 여부
11	기부금	법정기부금의 손금한도 계산시 이월결손금 차감 기부금 차기월액의과다 계상 여부
12	가지급금 인정이자	특수관계 대여금 있는 법인 등의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제출 여부
13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이 있는 법인의 「국고보조금 등 상당액 손금산입명세서」 제출 여부
14	중간예납 공제	중간예납의무 면제 소규모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부당공제 여부
1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한도	감면한도액 1억 원 초과여부, 한도액 계산시 상시 근로자 수 감소분 차감 여부
16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된 법인의 중소기업 적용 여부
17	농어촌특별세(조합법인)	당기순이익 과세대상 조합법인 등의 농특세 무신고 여부
18	미환류소득	신고대상자의 미환류소득 신고 누락여부 및 전기이월과 당기 계상액 차이 여부
19	산출세액 환산 오류	사업연도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년으로 환산 후 세율 적용 여부
20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여부
21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경과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22	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 해당 여부
23	농업회사법인감면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대해 감면기간(5년) 초과 여부
24	감면세액 추가납부	지방이전 법인의 수도권 재이전시 감면세액의 추가납부 여부
25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업무용승용차의 5년 정액법 감가상각 여부
26	감면요건 미충족	농업경영체 미등록법인의 부당감면 여부
27	감면대상 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청년창업중소기업 100% 감면 여부
28	감면대상 업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식기반사업 업종 미해당 법인의 감면 여부
29	감면기간 초과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5년) 초과 여부
30	토지 등 양도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산출명세서 제출 여부

* (오류검토 참고 항목 : 경고) 9, 12~14, 16, 17, 20, 22~29 / (오류수정 필요 항목 : 오류) 그 외

참고 7

자기검증용 검토 서식

서 식 명		작 성 대 상
1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	정규증빙을 수취하는 모든 법인
2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	신용카드, 상품권을 사용한 모든 법인
3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검토서식	특수관계인에 대여금이 있는 법인
4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지급이자 검토서식	업무무관자산 또는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보유 법인
5	중소기업 요건 자체 검토서식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모든 법인
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검토서식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법인
7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검토서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법인
8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검토서식	
9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검토서식	
10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검토서식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적용 법인
11	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사항 검토서식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법인
1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주요사항 검토서식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한 법인
1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검토서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법인
14	성실신고확인제도 검토서식	· 부동산 임대업 등 소규모 법인 ·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 중 법인전환한 기업
15	이월결손금 공제 검토서식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
16	대손금 요건 검토 서식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
17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검토서식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법인
18	접대비 세무조정 검토 서식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
19	경력단절여성 등 세액공제 검토 서식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 적용 법인
20	통합투자세액공제 검토 서식('22년 신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법인
2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검토서식('22년 신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법인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참고자료실

참고 8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대 분류	세 부 항목
신고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신고안내 동영상 및 PPT 자료 ○ 2022년 법인세 신고 시 달라지는 사항 ○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주요 해석사례·판례
법인세 신고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조정이란? ○ 법인세 신고기한 ○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 법인세 전자신고
영리법인 신고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실적법인의 간편 전자신고 ○ 창업한 중소기업 법인 ○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
비영리법인 신고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법인세 공제·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공제·감면 사항 ○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 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기 점검하기 ○ 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법인세 중간예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중간예납 전자신고 ○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동업기업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업기업이란? ○ 동업기업 과세특례 의의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 ○ 동업기업의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동업자의 납세의무
연결납세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납세제도란? ○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성실신고확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실신고확인제란? ○ 성실신고확인대상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 성실신고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 성실신고확인제 관련 서식
참고자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검증용 검토서식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참고 9

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 관련 개정사항

□ **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 이행기한을 4월로 연장**(’22년 신고분부터)

-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 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합리화

의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출연재산보고서 ②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보고 ③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결산서류 등 공시 ⑤ 주식을 5%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은 사후관리업무 이행 여부 신고 ⑥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신고
	종료 기한	3개월 이내



기한 연장	4개월 이내(기한 일원화)
----------	----------------

□ **국세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22년 보고분부터)

-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충족 및 의무이행 여부」에 대하여 매년 국세청(주무관청→국세청)에서 점검하도록 제도 변경



○ **의무이행점검 대상**

- ① 기재부로부터 지정·고시 지정기부금단체 : 장학회, 시민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 ② 당연지정기부금단체* :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의료법인 (종교단체 제외)

* 법인령§39 ① 1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로, '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이행 대상에 포함

○ **기부금단체의 의무사항**(법인령 § 39⑤~⑥)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결산서류 공시, 전용 계좌 개설 사용, 지출액의 80% 이상 직접 공익목적 지출 등

참고 10

주요 신고내용확인 추징 사례

①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변칙 회계처리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 사전 신고안내

-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있는 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 대상임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

□ 신고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은 표준대차대조표에 연도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장부를 작성하였고
 -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신고 누락

□ 검증결과

- (주)○○의 합계대차대조표(연도 중 증감내역 기재)를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인 대여금을 연도 말에 회수처리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대여한 것으로 변칙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



대차대조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등 분석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등 0억원 추징

②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여 법인세 탈루

□ 사전 신고안내

-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을 대상으로 가족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이 아님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

□ 신고내용

-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로 비용처리함

□ 검증결과

- 대표이사 배우자의 근무내역 분석결과, 배우자는 자녀 해외유학 동행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였으며 체류국에는 해당 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없는 등 근로용역 제공 사실이 없음을 확인
 - 이에 자녀 해외유학 출국시점부터 가공 계상한 급여 등 00억 원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



③ 특정시설물 이용권 취득 법인의 업무무관자산 관련 비용 부당계상

고가의 특정시설물(콘도, 휴양시설 등) 이용권은 실제 사주 등 특수관계인이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빈번

□ 사전 신고안내

- 대표이사가 고가 콘도·휴양시설 등을 법인 명의로 취득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비용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도참고자료로 사전 안내

□ 신고내용

- (주)○○은 해변가에 소재하는 골프장 단지 내 고가의 콘도회원권을 취득하고,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

□ 검증결과

- (주)○○이 취득한 고가의 콘도회원권은 지리적 위치·이용제한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 사용협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 실제 시설물 숙박내역 등을 자료 수집하여 이용자와 법인의 업무관련성(접대 및 복리후생 여부)을 검토한 바
 -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유지·관리비용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 0억 원 추정



4 의무 불이행 제재 부과 공과금의 부당 비용처리

법인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부당하게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탈루

□ 사전 신고안내

- 과징금·부담금 부과자료 등을 수집하여 동 지출액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음*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안내

* 위법·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부과된 과징금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신고내용

- 건설업 영위 법인 (주)○○ 등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납부하였으나
 -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과징금 납부금액에 대해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처리함

□ 검증결과

- 과징금·부담금 부과자료가 있는 법인 중 법인세 신고서상 손금 불산입 세무조정이 없는 법인을 분석하여
 -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처리한 과징금·부담금 0억 원을 손금 불산입하고 법인세 0억 원 추징



5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부당적용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사업을 승계한 후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

□ 사전 신고안내

- 납세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공제요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을 국세청 누리집과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 등을 통해 사전 안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검토서식

□ 신고내용

- 법인세 신고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을 활용하지 않고, 신설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함

□ 검증결과

- 금형 등을 제조하는 (주)○○는 대표이사가 창업 당시 동일 업종의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창업 해당 여부를 검토한 바
 - 해당 법인의 상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사업목적 및 거래처가 기존 개인사업자와 일치하는 등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이 승계한 다음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 0억 원 추징



법인설립 전 개인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사업목적, 거래처 등 분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법인세 0억원 추징

6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관련 비용을 전액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탈루

□ 사전 신고안내

- 법인 보유 고가의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 처분됨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

□ 신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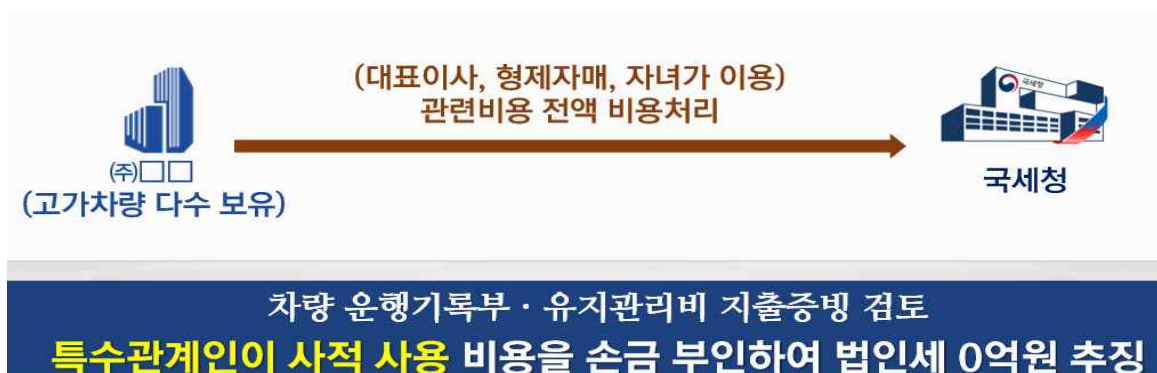
-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는 0억 원을 초과하는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산입함

□ 검증결과

- 법인 보유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와 유지관리비 등 지출증빙을 대조하여 검토한 바, (주)○○는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업무목적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 신용카드 사용 지역, 주유 내역, 하이패스 사용 현황 등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



7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을 양도 하였음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 사전 신고안내

-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함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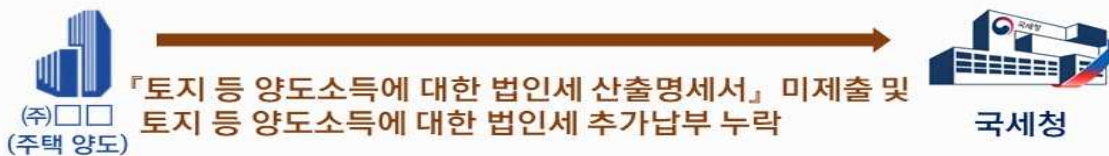
*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 신고내용

-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는 법인세법 시행령 § 92의2②에서 정하는 주택 및 관련 부수토지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고
 - 관련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 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 납부하지 않음

□ 검증결과

- 법인별 부동산 양도내역 등을 분석하여 추가납부 누락사실을 확인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0억 원 추정



부동산 양도내역 및 사용내역 등을 수집·분석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0억원 추정

8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소 신고

이전 사업연도 소득금액·법인세 등이 변경되었으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지 않고 변경 전 전기이월액을 당기에 계상하여 미환류소득을 과소신고

□ 사전 신고안내

- 수정신고 및 경정 등으로 이전 사업연도 소득금액·법인세 등이 변경된 경우, 재계산된 차기환류적립금, 초과환류액을 반영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해야함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

□ 신고내용

- 전기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한 (주)○○는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조사로 사업연도 소득이 증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상 차기환류적립금이 증액경정됨
 - 경정 전의 차기환류적립금을 이월된 금액으로 보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 납부함

□ 검증결과

- 이전 사업연도의 경정 내역을 반영하여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을 재계산 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0억 원 추정



참고 1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정부는 국민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경제활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와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21년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를 직전 2년 사업연도까지 일시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고용증대 세액공제액 한시 상향 등 고용 관련 조세지원을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있으니 법인세 신고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만 적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등

◆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적용) R&D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최저한세 등

- 아울러,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 외형 100억 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 납기연장* 신청세액 1억 원 이하는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습니다.

* (신청경로)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 '납부기한' 입력 > 민원사무명「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 인터넷 신청 클릭

참고 12

국제거래 및 해외투자 관련 자료 제출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거나¹⁾,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²⁾은 관련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유명세서³⁾를 제출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1)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2)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등
- 3) 2021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 외에 계속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한 보유명세서도 대상임

○ 법정 및 추가제출 요구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미(거짓)제출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 |

서식명	과태료		근거법
	부과 금액	한도	
① 국제거래명세서	특수관계인별 5백만 원 ¹⁾	1억 원	국조법 §60
②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③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④ 손실거래 명세서 ⑤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건별 1천만 원	5천만 원	국조법 §63
⑥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 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해외부동산등의 취득·운용·처분가액의 10% ²⁾	1억 원	

1) 자료 제출(시정) 요구 불이행시 미(거짓)제출 과태료금액×(1+지연기간/30) 부과(2억 원 한도)

2) 외국환거래법 제18조(취득) 및 제20조(처분)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제외

참고 13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를 조회

□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율'을 홈택스*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회경로)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지급보증정상가격 조회

※ 정상가격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각 관할 지방국세청(법인세과)에 문의